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보장성보험료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 류	사업자번호	2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	ŀ1	종피보험자	ł2	종피보험자3		
	엘아이지손해보험 (주)		(무)행복한인생	J보험			
보장성	202-81-48	3***	20081930*	**	610814-1*****	김문영	667,680
	흥국생명보험	(주)	(무)프리미엄암플 건강	플러스			
보장성	104-81-18	3***	8743176000	***	610814-1*****	김문영	941,400
	에이아이에이인터! 티드	내셔널리미	무)3대질병(· 갱)			
보장성	201-84-0	1***	61797***		610814-1*****	김문영	574,560
	인별합계금액		2,18		2,183,640		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.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09-21*	소**	일반	20,400
8-04-78*	[∦***	일반	13,800
8-20-82*	0 ***	일반	10,900
8-91-62*	경****	일반	174,500
8-96-01*	대***	일반	21,000
9-90-13*	손****	일반	4,000
0-82-06*	(*****	일반	2,8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47,4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47,40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·장애인·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순례	260507-2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4-21-68*	성**	일반	16,940
4-24-65*	희**	일반	1,200
4-51-98*	남****	일반	18,900
4-91-39*	밝****	일반	13,900
4-94-67*	우****	일반	28,800
4-94-90*	H+***	일반	4,500
4-96-11*	성**	일반	147,500
2-21-42*	행***	일반	2,4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34,14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34,140

- 1. 세액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- 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2.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: 본인·장애인·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7,852,022		
전통시장	10,500	인별합계 금액	7,997,322
대중교통	134,80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일반	74,200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대중교통	108,850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78,62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10,000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대중교통	61,80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일반	1,885,886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	호	상 호	상 호 종류	
214-81-37***		비씨카드 (주)	비씨카드 (주) 전통시장	
	일반			1,930,746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24,500
	대중교통			56,500
	일반			407,96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10,000
Z / 1 / 1 / 1	대중교통			114,150
인별합계금액				2,543,856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 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924,720		
전통시장	20,000	인별합계 금액	975,470
대중교통	30,75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
104-81-83***	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	일반	0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일반	2,588,050
104-86-23***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전통시장	28,00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	상 호	상 호 종류	
104-86-23***	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	하나카드(구하나SK카드) 대중교통	
	일반			748,44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16,000
LAI AIO I	대중교통			0
01111 -1111 -11	일반			1,839,61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12,000
대중교통				0
인별합계금액				2,616,050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'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

■ 2013년도 사용액 계

일반	1,397,601		
전통시장	35,000	인별합계 금액	1,432,601
대중교통	0		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취그여人조	조근	1월	2월	3월	4월	 공제대상금액
현금영수증	종류	5월	6월	7월	8월	
		9월	10월	11월	12월	
		216,850	227,400	266,750	79,900	
현금영수증 일반	96,600	59,100	89,850	40,900	1,202,000	
		32,050	0	42,000	50,600	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2014년도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월별 공제	대상금액		
현금영수증 경	종류	1월	2월	3월	4월	공제대상금액
20070	ο π	5월	6월	7월	8월	
		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	0	0	0	0	0
		0	0	0	0	
	일반					946,600
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0114 -111121	일반					255,400
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	전통시장					0
	대중교통					0
인별합계금액						1,202,00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15%(직불・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 30%) *다만,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'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'14년 하반기 직불카드・선불카드・현금영수증 사용액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이 '13년 연간 사용액의 50%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%
- 2. 공제한도: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% 중 적은 금액(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)
- ※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직불(선불)카드, 전통시장 사용분,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

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]

■ 차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문영	610814-1*****

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대출종류 (상품명)	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	상환 기간	주택 취득일	저당권 설정일	연간합계액	소득공제 대상액
		차입금	고정금리 차입금	비거치식 상환차입금	당해년 원금상환액		
주식회사 하나은 행 (201-81-33***)	주택분양권 대출 (가계일반자금 대출(분할)	2006-10-31 2036-10-31	30년	2006-11-22	2006-11-22	2,860,795	2,860,795
		0	0	0	0		

- 1. 공제대상금액 :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(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)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('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)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
-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2. 공제한도 :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,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,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, 상환기관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500만원, 600만원, 1,000만원, 1,500만원 한도

구분	2003년 이전 차입분 2011년 이전 차입분		2012년 이후 차입분(15년 이상)		
상환기간 종류	10년~15년 미만	15~30년 미만	30년 이상	고정금리,비거치상환대출	기타대출
한도액	600만원	1,000만원	1,5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



